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64
------	-----

2023. 9.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7월 27일, 이종환 의원(찬성자 42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정례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9.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종환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치료목적의 의료관광보다 광의의 개념인 웰니스 관광이 급부상 중으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임.
- 이에 서울시도 서울만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형 웰니스 관광 확대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취소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웰니스 관광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제정안의 개요

- 동 제정안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웰니스 관광 정책 발굴, 웰니스 관광 지정과 취소, 사업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 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음.

나. 추진현황 및 필요성

1) 추진 현황

-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의 합

성어로 일상 속에서 보다 나은 정신·육체적 상태 제고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웰니스 관광도시를 공모하고, 관광 상품 개발, 홍보·상품화, 기반조성, 웰니스 관광 페스타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2023.2.)에 따라 의료 관광 정책과 웰니스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웰니스관광 페스타’ 사업 예산(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웰니스 관광 사업은 초기단계라 할 수 있음.
- 또한 웰니스 관광의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2) 제정의 필요성

- 웰니스 관광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상품 개발 사업, 관광복지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 규정이 있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7조는 시장이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다만 웰니스 관광과 유사한 의료관광은 건강을 ‘질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여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웰니스관광은 ‘몸·마음(정신)의 내외적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적극적인 기능’을 건강으로 보아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¹⁾가 있음.

1) 김병헌, ‘웰니스 관광의 개념과 활성화 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진흥연구 제4권 1호, 2016년 12월 31일, 117면

- 이처럼 웰니스 관광은 산업저변 확대나 관광수요 대상이 넓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관광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웰니스 관광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입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 조문별 검토

1) 용어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제정안은 “웰니스 관광” 을 웰빙, 건강 또는 행복을 의미하는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아직 없고, 경기, 제주, 보령, 완도와 같은 타 지자체의 경우 ‘웰빙과 건강 또는 행복과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 정의 사용례 >

제정안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b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
타 지자체 조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b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배현진 의원)	(원안)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 (상임위 수정의견)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
정부 용어 사용례	거주지를 벗어나 관광자원에 기반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과 회복을 얻는 여행(문화체육관광부, 2023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공모 추진안, 2022.12)

2) 사업 추진과 지원사항(안 제5조)

- 제정안은 웰니스 관광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홍보마케팅 및 인식제고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체계적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서 규정한 추진대상 사업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웰니스 관광 지정 등(안 제6조)

- 제정안은 시장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서울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시설로 지정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지정 취소기준과 절차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어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4)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웰니스 정책수립, 웰니스 관광지정,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이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와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관광 관련 각종 위원회와 운영 목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5) 사업의 위탁(안 제9조)

- 제정안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라. 종합의견

- 정부는 2018년부터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선정과 지원을 통해 지역관광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진국형 웰니스 관광 시장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음.

- 또한 최근에는 국민들의 마음에 ‘치유와 행복’ 을 주는 가치 「웰니스 관광 산업 기반 구축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음.
- 서울수도 웰니스 관광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따라서 웰니스 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관광의 새로운 매력요소를 개발하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6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7월 27일

발 의 자: 이종환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은림,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2명)

1. 제안이유

- 최근 들어 치료목적의 의료관광보다 광의의 개념인 웰니스 관광이 급부상 중이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임.
- 이에 서울시도 서울만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형 웰니스 관광 확대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라.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취소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바. 웰니스 관광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울 웰니스 관광 지정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서울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서울 웰니스 관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2. 제6조에 따른 서울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 번호

2023060800000004

미참부 사유서 (1호 및 2호)

요청인 : 이종환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06.08.

회신일 : 2023.06.13.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및 제8조(위원회 운영)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위원회 운영) 해당]

1) 추계결과 = 23,000천원(연평균 4,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4,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안 제7조의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23,000천원(연평균 4,6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안 제7조)	4,600	4,600	4,600	4,600	4,600	4,600	23,000
	소계(b)	4,600	4,600	4,600	4,600	4,600	4,600	23,000
□ 총 비용(b-a)			4,600	4,600	4,600	4,600	4,600	23,000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 23,0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20,000천원+3,000천원

- 참석수당 = 20,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10명×2회×5년

※ 참석수당 단가 : 「202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업무추진경비 = 3,0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10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나. 기술적 추계 곤란

○ 같은 조례안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범위와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